

부의장 보궐선거의 건

의안 번호	207
----------	-----

제 의 연 월 일 : 2021. 11. 22.

제 의 자 : 의 장

1. 제안내용

- 지방자치법 제53조(보궐선거)에 따라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함.

2. 관계법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53조(보궐선거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

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